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2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3.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가. 제안이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를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m ²)	비고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02호(화곡동)	99.39m ² (약 30평)	공공 시설

○ 위탁사무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등
-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돌봄 관련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위탁기간: 5년(2022. 8. 1. ~ 2027. 7.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경쟁모집에 따른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762,187천원(국비: 99,490천원, 시비: 581,397천원, 구비: 81,300천원)

나. 추진일정

- 2022년 4~5월: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년 6~7월: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8월: 센터 운영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 본 동의안은 올해 8월 개소예정인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3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심의완료 하였음
- 검토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탁체 선정,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 및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 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